

【 주간포커스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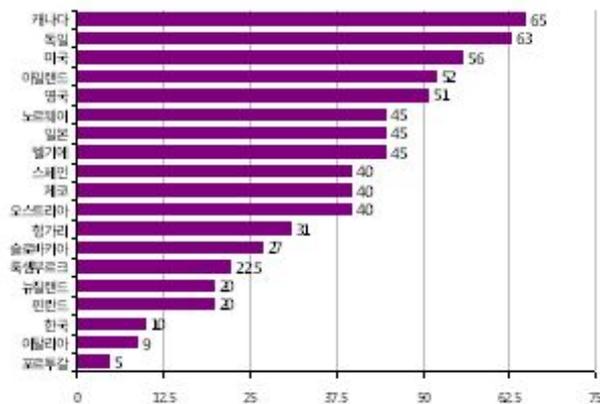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10월 현재 적립액이 약 21조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이 약 17.0%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양적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상의 제반 문제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간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는 한편,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도 점진적으로 기금형 지배구조로 전환되어 운용이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건전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연금지급보장장치 마련, 과감한 퇴직연금세제혜택 부여,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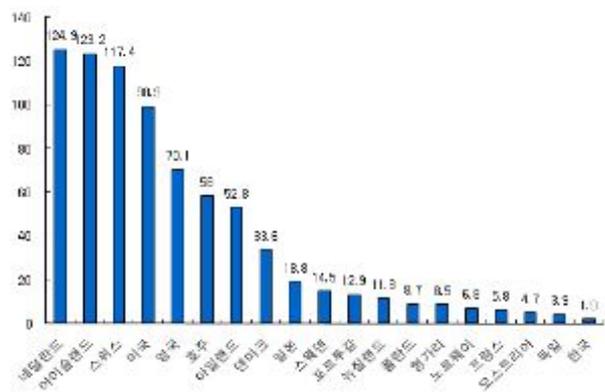
□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10월 현재 적립액이 20조 9,323억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이 16.8%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는 양적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흡함.

○ 일찍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가입률(%)



<표 2> GDP 대비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



- 캐나다와 독일은 60% 이상, 미국과 영국은 50%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
 -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2009년 기준)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1.9%에 불과하여 퇴직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도 저조
 - 네덜란드와 아이슬랜드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GDP를 상회하며, 미국과 영국도 동 비중이 각각 98.9%, 70.1%에 달함.
- 향후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검토되고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의 고령화리스크(재정리스크) 대응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
-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으로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등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중심에서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를 검토할 필요
- 둘째,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모든 국가가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단일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도 시행에 따른 일시금 선호 현상으로 인해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자칫 와해될 우려
 - 우리나라도 향후 점진적으로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자산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 셋째, 현재와 같이 기업과 금융회사가 일대일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금융시장 발전 및 운용 투명성 등을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현재와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는 기업과 금융회사와의 금전 및 거래관계에 의해 가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도 없지 않음.

-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기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여 감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 따라서 계약형 지배구조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 존재

□ 넷째, 퇴직연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독과 엄격한 수탁자책임 등을 부여할 필요

- 현재 53개 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위한 불건전행위 및 과열경쟁 양상을 띠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 우려
 - 2005년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 허용 등으로 고이율보장 제시 경향이 뚜렷하고 수수료 인하 등 가격중심의 경쟁심화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우려
-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건전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불건전행위(일종의 꺾기), 은행 자행예금허용의 적법성, 부실사후관리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다섯째,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연금지급보장장치 마련, 퇴직연금세제혜택 강화,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선진국처럼 기업의 도산 및 파산시 연금지급보장제도에 의해 법적으로 연금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및 영국 등은 인수방식, 독일 및 스웨덴 등은 구매방식 형태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완전히 보장
- 또한 별도의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법정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 감소 등을 통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
 - 미국의 경우 1만 6,000달러까지 퇴직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퇴직연금활성화를 적극 유도
- 점진적으로 양적규제방식에서 질적규제방식인 자율규제방식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방식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투자상품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상품의 선택폭 확대 필요 KiRi